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2년 10월 11일(화) 13:30	■ 장소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	------------------------	------	------------

- 참석 : 재적 12명 중 8명 참석
- 조진 공공운수 조직국장 참관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정규직화 경과
5. 본부 및 사무처(직할) 현안 사항

□ 심의안건

[안건1] 규칙 개정의 건

▷ 원안 통과

■ 희생자 보상규정 운영세칙 개정

-현행-

항목	지급기준	지급액
대학학자금 (학기당)	- 국내(해외)대학교 학기별 성적 기준 A, B 학점 - 최대 8학기(2년제 4학기) 한도	A학점 이상 250만원 B학점 이상 150만원 해외의 경우 US\$2,500

-개정(안)-

항목	지급기준	지급액
대학학자금 (학기당)	- 국내(해외)대학교 학기별 성적 기준 A, B 학점 - 최대 8학기(2년제 4학기) 한도	A학점 이상 250만원 B학점 이상 150만원 <u>해외대학도 국내대학과 동일 금액적용</u>

[안건2] 제86차 중앙위원회 후속 조치의 건

- ▷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노조 요구안 확정
▷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세부사항 확정
-명칭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고용안정 쟁취!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전력민영화 분쇄!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정의로운 전환 발전노동자 공동투쟁

- 일시 : 2022년 10월 29일(토) 1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한국발전산업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안전3] TUED 공동성명 동참의 건

▷ 공공, 저탄소, 에너지 미래를 위한 TUED 공동성명에 동참한다.

[안전4] 사무처 직원 임금 규칙 개정의 건

▷ 원안통과. 단, 나이 호봉체계는 2022년 10월부터 적용한다.

■ 사무처 상근자 임금 지급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임금 기준) 임금지급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마. 상 여 금 : 기본금의 600% 지급	제2조(임금 기준) 임금지급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마. 상 여 금 : 상여금은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맞춰 각 50%씩 지급하되, 기본금 기준으로 한다.(2022.10.11. 개정)
제4조(휴일, 휴가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 및 정휴일로 한다. 2. 사창립기념일(4월 첫 번째 금요일) 4. 조합창립기념일(7월 세 번째 금요일)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5. 배우자의 출산 : 3일	제4조(휴일, 휴가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 및 정휴일로 한다. 2. 삭제(2022.10.11. 개정) 4. 삭제(2022.10.11.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5. 배우자의 출산 : 10일(2022.10.11. 개정)
제5조(호봉적용 및 경력산정 기준) ① 신규 채용 상근자는 1호봉부터 적용한다. ② 호봉은 1년 이상 상근한 자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1호봉씩 인상한다. ③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노동조합 가. 연맹, 총연맹 등 상급단체 전임 : 1 나. 단위노조 전임 : 0.8	제5조(호봉적용 및 경력산정 기준) 호봉 세부 내용 (삭제 2022.10.11.) - 호봉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력 + 군복무 + 학력으로 산정 - 학력 ▪ 대학교 : 1년 1호봉으로 최고 4호봉(단, 의료대학은 6호봉) ▪ 대학원 : 1년 1호봉으로 석사과정은 최고 2호봉, 박사과정은 최고 3호봉

다. 단위노조 간부, 조합원 : 0.5 2. 노동운동 관련 단체 상근 : 0.6 3. 기타 직장(일반 직장 등) : 0.3 4. 경력과 학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을 인정한다.	- 군복무 : 복무 개월 수 - 경력 : 전업주부 포함 근무 개월 수
--	---

[별표] 호봉별 기본급표(2022 지급표)

2022년 현재				2023년 개정			
호봉	기본급	호봉	기본급	호봉	기본급	호봉	기본급
1	1,923,000	21	2,090,000	1	2,671,000	21	2,841,000
2	1,928,000	22	2,137,000	2	2,676,000	22	2,889,000
3	1,931,000	23	2,184,000	3	2,679,000	23	2,937,000
4	1,934,000	24	2,229,000	4	2,682,000	24	2,982,000
5	1,937,000	25	2,274,000	5	2,685,000	25	3,028,000
6	1,941,000	26	2,321,000	6	2,689,000	26	3,076,000
7	1,943,000	27	2,366,000	7	2,691,000	27	3,122,000
8	1,947,000	28	2,418,000	8	2,696,000	28	3,175,000
9	1,949,000	29	2,457,000	9	2,698,000	29	3,214,000
10	1,952,000	30	2,498,000	10	2,701,000	30	3,256,000
11	1,954,000	31	2,538,000	11	2,703,000	31	3,297,000
12	1,957,000	32	2,578,000	12	2,706,000	32	3,337,000
13	1,959,000	33	2,618,000	13	2,708,000	33	3,378,000
14	1,961,000	34	2,652,000	14	2,710,000	34	3,413,000
15	1,966,000	35	2,688,000	15	2,715,000	35	3,449,000
16	1,977,000	36	2,721,000	16	2,726,000	36	3,483,000
17	1,988,000	37	2,749,000	17	2,737,000	37	3,511,000
18	2,005,000	38	2,778,000	18	2,755,000	38	3,541,000
19	2,016,000	39	2,806,000	19	2,766,000	39	3,569,000
20	2,052,000	40	2,836,000	20	2,802,000	40	3,600,000

○ 상여금 400% 기본급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을 1.7% 반영

○ 2023년부터 명절(설, 추석) 상여금 50%만 지급한다.

※ 위 호봉별 기본급표는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

[안건5] 목간 전용의 건

▷ 원안통과

[안건6] 명예퇴직 조합원 감사패 수여의 건

▷ 명예퇴직 조합원도 공로패 대상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기타토의]

- 발전회사 채용형 인턴직원 임금 차별에 관한 건

▷ 법률 자문 등 세부 사항 검토

- 전기차 연비 조정의 건

▷ 현행 KM당 50원에서 140원으로 상향 조정(안) 차기 중집 시 안건 제출.

- 직무급제 관련 토론

- 노조 선거 후보 등록 시 현직사퇴 및 회기 변경 관련 토론

- 공공운수노조 산별 전략 관련 토론